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02
----------	-----

2024. 10. 15.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9. 30. 이향숙 의원 대표발의(8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0. 2.)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향숙 의원)

- 상위법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합 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이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이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이 적게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하고, 이러한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음.
 - 정부의 정책 목표 수립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후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부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신속하게 보급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나타났음.
 - 이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여 설치하고, 그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해당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음. 그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들의 해당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현황

나. 검토 내용

- 안 제8조제1항은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 구청장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안 제8조제2항은 구청장이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6항과 대부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인 표현을 비교하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친환경자동차법의 제11조의2제6항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까지는 구청장이 마련할 수 있다고 한정하였고, 충전시설의 운영 부담까지 덜어준다고 하지는 않았음.
 - 실무적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부담될 여지가 있어, 문구 표현은 되도록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6항 >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지원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p>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p>	<p>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고 ----- -----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p>

- 안 제8조제3항은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1항의 전제 조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데, 이 조례안 제8조제3항에의 전제 조건은 그보다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는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목적어를 명확하게 기재하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고 하거나,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고 표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1항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1항 >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임대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신 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②(생략)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 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②(생략) ③ ----- ----- ----- -----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은 단순 누락인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제4항은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것임.
- 이 내용 중 본문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본문의 내용과 같으므로 타당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단서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②지방의회 동의로 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에서 정한 절차와 같고, 타당하다고 보임.

○ 안 제8조제5항은 안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면율에 관한 것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임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이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가 사용허가의 대상인 행정재산과 대부분 가능한 일반재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됨.

[붙임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자치구별 도입 현황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조례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i)이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ii)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친환경자동차에는 임대료 경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렇게 친환경자동차 관련 조례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각 내용이 연결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은 이미 다른 기초자치단체¹⁾에서 도입한 방식임.

1)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1항 >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5항 >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⑤ ----- ----- ----- ----- <u>조례</u> 에 따 른다.

- 향후 관리책임부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친환경자동차 임대료 경감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검토 후 보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5항에 이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5항을 해당 조례에서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서는 편의상 구체적인 위치는 생략하고 문구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정의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전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5항에서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 신설 방안 >

수 정 의 건

<예시> (현행 조례에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연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 종합 의견

○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

-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도 신설하는 것은 구민의 친환경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됨.

○ 친환경자동차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 지원

- 법령 검토 결과 구청장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부담을 덜

어주려는 목적으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형식상 입법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음.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게 되면, 그 규정은 일종의 특별조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경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적용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부서가 검토하여 협의하고, 그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23호]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2024. 9. 기준)

연번	자치구	조례 명칭	시행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2024. 5. 20.
1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1. 11.
2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2023. 7. 21.
3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4. 4.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1. 15.
5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5. 13.
6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7. 18.
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7. 3.
8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023. 4. 20.
9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023. 6.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2019. 6. 3.
10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022. 9.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6. 7.
11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024. 5.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12. 30.

[붙임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자치구별 도입 현황

(서울특별시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2024. 9. 기준)

자치구 조례 현황총괄 (친환경자동차 조례 내 공유재산 내용 여부)

구 분	자치구	자치구명
○ 관련 내용 보유 자치구	11	-
- 친환경자동차 조례	7	종로, 용산, 광진,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 공유재산 조례	1	관악
- 양 조례 모두	3	서초, 송파, 강동
○ 조례에 해당 내용 없음	14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 6. 2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03호, 2023. 6. 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재무과), 2155-6497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①~②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4. 10. 30., 2022. 5. 30., 2023. 6. 27.>

1호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④항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9. 6.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189호, 2019. 6. 3., 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기후환경과), 2155-6478

제8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 9. 13.]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33호, 2022. 9.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재무과), 2147-2460

제29조(대부료의 감면)①~②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9.26., 2022.9.13.>

1호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신설 2022.9.13.>

④항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7.]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723호, 2024. 6.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맑은환경과), 02-2147-3250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07.>

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4.06.07.>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06.07.>

⑥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4.6, 2024.06.0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 5. 16.]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810호, 2024.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재무과), 02-3425-5460

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①~②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호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개정 2011.7.27>

<개정 2021. 5. 26., 2022. 10. 19.>

④항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0.]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559호, 2020. 12. 30., 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기후환경과), 02-3425-5950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 4. 20.]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509호, 2023. 4.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재무과), 02-879-5354

제30조(대부료의 감면)①~②항 생략

3. 1항~2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한다.

1호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신설 2008. 1. 3., 2013. 12. 31., 2021. 11. 11., 2023.4.20.>

④항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1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07호, 2022. 11. 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환경보전팀), 02-2148-2445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 동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개정 2022. 11.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3. 7. 21.]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47호, 2023. 7. 21., 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맑은환경과), 02-2199-7670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

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2. 4. 4.]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274호, 2022. 4. 4.,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450-7357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 11. 15.]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581호, 2023. 11. 1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녹색환경과), 2600-4061

-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5.>
-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신설 2023.11.15.>
-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76호, 2024. 3. 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환경과), 02-2627-1532

- 제6조(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8.>
-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3.8.>
 -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 7. 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767호, 2024. 7.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환경과), 02-2670-3472

-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24. 7. 18.>
 - ④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18.>

⑥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 7.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58호, 2023. 7.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환경과), 02-820-9738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0. 15.)

- 질 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규정의 근거에 대해 상위법 조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문구를 간결히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 변 : 대표발의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임대료 감경 80퍼센트임. 개정 취지와 일치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조와 호를 명시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7. 토론 요지

- 규정 사항의 근거 명시에 있어 상위법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근거 법령을 조례가 아닌 상위법으로 바꾸고 조례의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근거 법령의 용어 및 용어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402호

발의일자 : 2024. 10. 15.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근거 법령의 용어 및 용어 띄어쓰기에 맞춰 용어를 수정함
- 규정 사항의 근거 명시에 있어, 상위법에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근거 법령을 조례가 아닌 상위법으로 바꾸고 조례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용어의 띄어쓰기를 근거 법령에 맞춰 수정함(안 제8조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규정을 간결하고 입법 체계에 맞도록 근거 법령을 바꾸어 수정함(안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및 기술지원”을 “지원과 기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할”을 “한다)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u>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p> <p><u>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u></p>	<p>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 <u>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u> ----- -----.</p> <p>③ ----- ----- ----- ---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제8조 ~ 제13조 (생략)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 제14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 제14조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p> <p><u>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p><u>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제8조 ~ 제13조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 제14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2
----------	-----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 의 자 : 이향숙·이동호·김현정·
이도희·손민기·윤석민·
우종혁·노애자 의원
(이상 8인)

1. 제안이유

상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임법령 등 작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p> <p><u>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u></p> <p><u>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u></p>

제8조 ~ 제13조 (생략)

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 제14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